

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4.10]
(일부개정) 2023.04.10 조례 제1906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행정지원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10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[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](#)」(이하 “[법](#)”이라 한다.)[제5조](#)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-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[법 제6조](#)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경기도 파주시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시민의 협력)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-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-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「[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](#)」 규정을 적용한다.(개정 2014.12.30)

제6조(지원대상사업) [법 제16조 제3항](#)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
-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-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 <신설 2023.4.10>
-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제6호에서 이동 2023.4.10>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[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](#)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12.30)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1조 중 “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” 및 “그리고 재향군인회”를 삭제한다.
2. 제2조 중 “제3호”를 삭제하고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.
3. 제4조제3호 중 “· 모범재향군인회회원”을 삭제한다.
4. 제5조 중 제명의 “및 군인회”와 제1항 중 “ 및 군인회”를 삭제한다.

부칙(2014.12.30 조례 제1198호) (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” 를 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” 를 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” 로 한다.

부칙(2023. 4. 10. 조례 제190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